

# 보도자료

2022. 7. 4.



# 양형위원회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

## 양형위원회 7/4(월) 제117차 회의 결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함 ☞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 1. 설정 범위 확대

- 처벌조항이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대하여 양형기준 추가 설정

### 2. 유형 분류 체계화

-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와 중유형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소유형을 법정형 변동을 반영하여 재분류
-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범죄는 행위 태양, 법정형, 조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장애인(13세 이상) 의제추행과,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장애인(13세 이상) 의제간음/강제추행과 각각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

-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과 각각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3. 권고 형량범위 조정

- ▣ 법정형 변동,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 권고 형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2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3년-5년6월<br><u>2년6월 - 5년</u> | 5년-8년<br><u>4년 - 7년</u> | 6년 - 9년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br>주거침입 등 강간/<br>특수강간 | 3년-5년6월<br><u>3년6월 - 6년</u> | 5년 - 8년                 | 6년-9년<br><u>7년 - 10년</u> |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br>특수강제추행 | 1년6월-3년<br><u>2년6월 - 4년</u> | 2년6월-5년<br><u>3년 - 6년</u> | 4년-7년<br><u>5년 - 8년</u> |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1년6월-3년<br><u>3년6월 - 5년</u> | 2년6월-5년<br><u>4년 - 7년</u> | 4년-7년<br><u>6년 - 9년</u> |

### 4. 양형인자 정비

- ▣ 특별가중인자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규정을 수정하여 적용 범위 확대
-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의 정의규정 수정(수정안에서 변경 의결된 부분)

#### ■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처벌 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예시를 추가하여 정의규정 보완
- 「2차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반영(수정안에서 변경 의결된 부분)

####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적용범위 제한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7. 4. 16: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주요 내용

### 1. 설정 범위

- 처벌조항이 신설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
  - ① 2019. 1. 15.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

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 8조의2)

② 2020. 5. 19.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추가설정(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2. 유형 분류

○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와 중유형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소유형을 법정형 변동을 반영하여 재분류

- 다음 ① ~ ④ 각 범죄는 범죄의 위험성, 죄질과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해당 범죄들 사이 법정형 격차가 커짐. 이에 법정형을 기준으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재분류

###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             |
| ② 주거침입 등 강간            | 무기, 7년↑(개정)    |             |
| ③ 특수강간                 | 무기, 7년↑(개정)    |             |
| ④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 무기, 5년↑ or 5년↑ |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 |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무기, 7년↑(개정) |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 |
| ②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5년↑         |             |
| ③ 특수강제추행               | 5년↑(개정)     |             |
| ④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강제추행) | 2년↑         |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 |

○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

**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

- 행위 태양, 법정형, 조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와 동일한 중유형(01.의 다)으로 분류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이하 생략)

○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 행위 태양, 법정형, 조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제1항)와 동일한 중유형(01.의 라. 및 02.의 나.)으로 분류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3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5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

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하 생략)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2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4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5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이하 생략)

### 3. 권고 형량범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br>주거침입 등 강간/<br>특수강간 | <del>3년 - 5년6월</del><br><u>3년6월 - 6년</u> | 5년 - 8년 | <del>6년 - 9년</del><br><u>7년 - 10년</u> |

-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성범죄[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와 위 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조
-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상향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권고됨

○ 청소년 강간 권고 형량범위 변경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청소년 강간 | 3년—5년6월<br><u>2년6월 - 5년</u> | 5년—8년<br><u>4년 - 7년</u> | 6년 - 9년 |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성범죄[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감경영역(2년6월 - 5년), 기본영역(4년 - 7년), 가중영역(6년 - 9년)]와 청소년 강간을 기본 범죄로 하는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감경영역(3년6월 - 6년), 기본영역(5년 - 8년), 가중영역(7년 - 10년)] 등을 참조
- 종전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범죄의 기본영역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시정
-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여(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보다 다양한 행위태양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사정도 고려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변경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br>특수강제추행 | 1년6월—3년<br><u>2년6월 - 4년</u> | 2년6월—5년<br><u>3년 - 6년</u> | 4년—7년<br><u>5년 - 8년</u>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1년6월—3년<br><u>3년6월 - 5년</u> | 2년6월—5년<br><u>4년 - 7년</u> | 4년—7년<br><u>6년 - 9년</u> |

-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 법정형 하한이 같은 다른 성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고려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영역,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하한과 상한이 1년 6월 ~ 2년씩 대폭 상향되었고, 기본영역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 6월까지 권고됨(중전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6월까지 권고)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은 각 영역의 하한 및 상한이 6개월 ~ 1년씩 상향됨.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2년까지 권고됨(중전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 6월까지 권고)

#### 4. 양형인자

##### ▣ 특별가중인자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 확대
  -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의규정을 수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



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수정안에서 변경 의결된 부분)

- 정의규정 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괄호 문구를 삭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균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로서 「처벌불원」 만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함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 일반가중인자

- 실제 발생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여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정의규정 보완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차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반영(수정안에서 변경 의결된 부분)

-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특수성 고려

●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정의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신설

## 5.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삭제

## 2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18차 회의)

- 일시 : 2022. 8. 16.(화) 오후
- 장소 : 대법원 회의실
- 안건 : 관세법위반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  
정범위, 유형 분류) 심의